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◎ 이용계약내용

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계약목적 :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급여 제공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.

② 계약기간 : 공단에서 발행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.

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는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, 손해배상책임, 계약의 해지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요양서비스 제공을 종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.

⑤ 계약의 해제: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, 시설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(보호자)는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- 신원인수인은 센터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.
- 신원인수인은 센터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-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- 신변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급여제공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
-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변경 및 요청 사항을 유선으로 할 수 있다
- 급여제공 범위와 급여 제공자인 장기요양요원에 관하여 안내를 받는다
-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
- 신원인수인은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
- 장기요양급여제공 체결에 있어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청한다.
- 장기요양의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해제한다

◎ 이용비용 및 수납

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.

① 월 이용료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.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재가급여 월한도액	1,885,000	1,690,000	1,417,200	1,306,200	1,121,100	624,600

구분	급여제공시간/원							
방문요양	30분 이상	60분 이상	90분 이상	120분 이상	150분 이상	180분 이상	210분 이상	240분 이상
	16,190	23,480	31,650	40,280	46,970	52,880	58,930	65,000

구분	수 가 (단위 : 원/ 회당)		
방문목욕	목욕차량 이용 (차량내 목욕)	차량이용 (가정내목욕)	목욕차량 미이용 (60분)
	82,160	74,070	46,250

② 본인부담금

- 일반이용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- 의료급여수급권자, 감경수급자 : 6%, 9%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: 0%

③ 그 밖의 비용부담액

-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.
-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수급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